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551962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하준필, 윤종한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황정희

변론 종결2021. 6. 17.

판결 선고2021.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5,200,000원 및 위 돈 중 56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8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8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8. 1. 초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병원의 빙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명: E 빙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

□ 공사장소: 서울시 강남구 E

□ 공사기간: 착공 2018. 1. 2.

준공 2018. 8. 10.

□ 도급금액: 54억 9,3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8조(지체상금)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 C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의 지급시 공제 후 지급한다.

나. 피고와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D병원 본관의 흡수식냉동기(WCSH063, 1대) 및 빙축열 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납품(설치) 계약서

1. 공사명: E 병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 중 흡수식냉동기(WCSH063, 1대) 및 병축열 설비 교체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병원 본관

3. 공사기간: 착공 2018. 1. 2.

준공 2018. 8. 10.

4.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납품금액의 20% (계약후 익월현금지급, 선급금 이행증권포함)

나. 기성부분금: (1) 지급방법: 중도금 납품금액의 70% (공정율에 의해 익월현금지급)

잔금 납품금액의 10% (준공 후 익월현금지급)

6. 납기요청일: 흡수식냉동기1대: 4월 1일 현장입고 현장조립설치 4월 15일 완료

병축열 설비교체공사: 4월 15일 완료

10. 지체상금: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3%

12. 공사범위: 장비철거 및 반출, 흡수식냉동기용 스팀용 제어밸브지급, 공사 관련 대관업무, 공장검수, 판넬 설치 및 2차 배선(지정위치), 공사구간 보양 포함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완공

1) 원고는 2018. 5. 30. 1번 축열조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8. 7. 20. 2번 축열조 설치를 완료하여, 병축열 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흡수식 냉동기도 설치하여 2018. 8. 10.부터는 각 축열조와 흡수식 냉동기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8. 7.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준공서류를 제출하였고, C은 2018.

8. 10.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모두 완공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는 "공사기간"란 "준공일"인 2018. 8. 10.이다.
- 2) 원고는 2018. 8. 10.로 정해진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14억 1,900만 원 중 선급금 2억 8,380만 원만을 지급한 뒤 현재까지 기성부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기성부분금과 잔금의 원금 11억 3,520만 원 및 ① 위 돈 중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공정률에 따라 2018. 3.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성부분금 5억 6,760만 원(= 4억 2,570만 원 + 1억 4,19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② 2018. 4.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성부분금 2억 8,38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6. 1.부터, ③ 나머지 기성부분금 및 잔금 합계 2억 8,38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2018. 8. 10.)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물량을 자체 정산한 비용 및 2018. 3. 23.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피고가 입은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돈만을 지급받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 또한, 원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가 2018. 5.경 원고를 대신하여 F의 직원들에게 그 급여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1억 8,983만 원을 직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하도급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위

직불대금 1억 8,983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 관련 배상비용으로 3,08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 역시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는 "납기요청일"인 2018. 4. 15.이다. 그리고 위 "납기요청일"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2018. 4. 30.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8. 5. 13.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5. 13.을 도과하여 2018. 8. 10. 비로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7억 359만 원(=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 × 지체상금율 3% × 2018. 5. 14.부터 2018. 8. 9.1) 까지 87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지체상금채권 37억 359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11억 3,520만 원과 상계하는바, 상계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위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잔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준공 후 익월 현금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억 1,900만 원 중 선급금 2억 8,38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기성부분금 및 잔금 합계 11억 3,520만 원(= 14억 1,900만 원 - 2억 8,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 3,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2018. 8. 10.)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위 11억 3,520만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공정률에 따라 원고가 2018. 3.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성부분금 5억 6,76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2018. 4.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성부분금 2억 8,38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6.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공정율에 의해 현금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된 공정률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일부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1억 6,000만 원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물량을 자체 정산한 비용 및 이 사건 화재로 피고가 입은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받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0. 내지 1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정산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실, 위 정산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위 1억 6,000만 원이 당연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F에게 지급한 직불대금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가 2018. 5.경 원고를 대신하여 F의 직원들에게 그 급여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1억 8,983만 원을 직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하도급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위 직불대금 1억 8,983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불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법률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본래 원고가 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F 사이에는 2018. 5. 18.을 착공일로 하는 펌프 주위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당사자 사이에 2018. 5. 23. 1억 8,983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F에게 지급한 1억 8,983만 원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화재 관련 배상비용 3,080만 원 공제(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 관련 배상비용으로 3,08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 역시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9. 18.자 답변서 3, 4쪽).

나)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3. 23.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인 D병원 본관 지하 3층에서 축열조 해체공사 중 플라즈마 절단작업 불티로 인한 PE배관 화재, 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8. 4. 5. 이 사건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위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80만 원을 요구받고, 2018. 5. 15. 피해복구업체인 주식회사 H에게 3,0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9. 10. 내지 11.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정산 협의 진행 과정에서 G 손해배상 관련 비용으로 원고가 32,505,500원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내역서(을 제8호증의 2 5쪽)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본래 원고가 G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손해배상금 3,08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3,08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당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에서 당연히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을 상계 항변으로 선행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3,080만 원 지출일인

2018. 5. 15.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2018. 8. 10.)의 익월 말일인 2018. 9. 30.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마) 나아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9. 18.자 답변서가 2020. 9. 2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9. 30.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바) 한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8. 9. 30. 이전에 위 부당이득금 이행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계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1,104,400,000원(= 수동채권 1,135,200,000원 - 자동채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사)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4)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에 관하여, 피고는 "납기요청일"인 2018. 4. 15.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공사기간"란 "준공일"인 2018. 8. 10.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나)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초 발주자인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D병원 본관 흡수식냉동기

및 빙축열 설비 교체공사) 부분을 2018. 4. 21.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4항). 이후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게 되었다.

② 원고가 2017. 12. 20. 작성한 수주 사양 확정 회의록(갑 제14호증)의 "납기"란에는 본래 "2018.
2.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회의를 거쳐 위 날짜를 "2018. 4. 1."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회의록 하단 "수정(Revision) 이력"란에는 "납기변경(180220 →
180401)", "고객 요청 사항"란에는 "공인검사 후 3분할하여 최단기간 현장설치 예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가 2018. 1. 12.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설명자료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을
제1호증의 2 10쪽)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8. 1. 8.경부터 시작하여 2018. 4. 초경
마무리되고, 2018. 4. 10.경에는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설명자료를
토대로 2018. 1.경 C 관계자들과 C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전체 관리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회사(Construction Manager, CM)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J'이라
한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공계획보고회'를 진행하였다.

④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3일 전인 2018. 1. 5. 원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발주서(을 제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납기일"이 "2018. 3. 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는 "공사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C과 J이 2018. 3. 7. 원고와 피고에게 긴급 대책회의를 요청하여, 2018. 3. 8. 위 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빙축열 공정지연 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위 당시 작성된 회의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 3. 8.자 공정회의록

제목: 빙축열 공정지연 대책회의

참석자: D병원, J, K, 피고, 원고

[E 빙축열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 중 빙축열시스템 설치공사 공정지연 대책회의]

- 공사일정: 당초 03/31 완료 예정이었으나, 설계 시 축열조 내 브라인용량 추정 오류로 인하여,

브라인 보관 장소 확보, 보관 및 폐기 작업에 3주이상 소요됨, 준공을 1차(04/15), 2차(04/30)로 나누어 공사계획을 함

<문제점 제기 - 병원시설팀, 운영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 상황(능력)으로는 빙축열시스템의 1차, 2차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하절기 냉방 부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됨[빙축열시스템의 경우

전체용량(1,200RT) 대체 가능장비 없음]

- 병원 특수성으로 공사 중 돌발상황(민원으로 인한 작업 중단)은 현설단계부터 수차례 언급 및 대처 가능한 여유 일정을 전부 소진하여, 추후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CM사(J)/도급사(피고)/하도급사(원고)에서는 현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공사추진 또는 공사포기 등 의사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알려주면, 의견에 따라 병원시설팀/운영사 내부 결재 진행 예정

<의사결정 및 대책방안 - 피고, 원고>

- 빙축열시스템 공사 추진 결정(1차 - 04/15, 2차 - 04/30)

⑥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D병원 빙축장비 공사완료일 준수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2호증의 4)을 보냈다.

제목: D병원 빙축장비 공사완료일 준수의 건

발신: 원고, 수신: 피고

상기 발주의 빙축열 교체공사 건에 대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공정일을 준수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15.일

#2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30.일

⑦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인 2018. 3.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3호증의 4)을 보냈다.

제목: D병원 빙축장비 안전관리강화 내용 송부의 건

발신: 원고, 수신: 피고

■ 개요

- 사고일자: 2018년 3월 23.일(12시 25분경)

- 사고내용: E 병원 축열조 해체공사 중 플라즈마 절단작업 불티로 인한 PE배관 화재 발생

■ 관련내용

-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당사는 아래의 일정에 대해 안전관리강화를 통한 공정준수로 기간 내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목표한 공사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관리 및 작업여건확보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1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15.일

#2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30.일

■ 첨부: 각서 1부.

작업각서

1. 공사명: 빙축열 설비 교체공사

2. 작업기간: 2018년 3월 26.일 ~ 2018년 4월 30.일

본 작업과 관련하여 목표 준공일에 대해 당사가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투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⑧ J은 2018. 4. 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축열조 전문가의 부재로 축열조 설치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예정공정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4호증의 4)을 보냈다.

제목: 축열조 설치 관련 건

발신: J, 수신: 피고

3. 축열조 설치공정 중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 조치방안 및 일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축열조 설치 공정 지연: 설치 공정, 인원 투입 일정 등 예정공정 미준수

(현 공정상 04/16 빙축열 1차 운영 불가, 병원 냉방운영 차질 불가피)

4.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축열조 전문가를 배치하여 품질관리 및 예정공정을 준수하고, (후략)

⑨ 이에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4호증의 5)을 보냈다.

제목: E 빙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 중 빙축열교체공사 진행 관련의 건

발신: 피고, 수신: 원고

2. 당사와 계약 진행 중인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빙축열 납품 및 완료일자인 1차 4월 15일, 2차 4월 30일 기한 미준수 및 대책 방안 문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귀사의 임원 또는 빙축열 팀장 현장 상주하여 작업팀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일정 및 대책 방안 회신 부탁드립니다.

3. 귀사는 3월 9일, 26일 공사완료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활치 않아 현재 1차 4월 20일 목표로 연기되었고, 이 일정 또한 발주처에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열조 제작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4. 빙축열 공사 지연시 D병원 병실 냉방에 큰 손실을 주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빠른 대책 및 대책 전문가 지원을 하여, 일정 및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⑩ J과 원고, 피고가 각 참석한 2018. 4. 9.자 공정회의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제5호증의 1)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 4. 9.자 공정회의록

참석자: J, 원고, 피고

2. 축열조 공정관리(1차: 04/16, 2차: 04/30 준공)

- 축열조 준공 지연으로 인한 타공정 지연: 축열조 지연시 흡수식 냉동기, 상온용 터보냉동기 교체 불가, 냉방 부하 전체 가동시 9월 이후로 일정 지연됨

- 기존 약속한 1차, 2차 준공 지연에 대한 대비책 전혀 없음

- 제출한 공정표 기준으로 04/13(금) 일정 지연시 추가 관리자 보완 필요(원고 축열조 전문 관리자 추가)

3. 미승인 자재 사용 관련

⑪ 이후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5호증의 2)을 보냈다.

제목: E 빙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 공사 중 빙축열교체공사 진행 관련의 건

발신: 피고, 수신: 원고

2. 당 현장 비승인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간보증 관련 회신을 2018년 4월 19.일까지 대표이사 직인하여 회신 바람.

3. 공기일정 준수에 관한 사항

3-1) 빙축열 터보냉동기 2대를 2018년 4월 23.일부터 가동하오니 차질 없도록 바람. 지연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2) 당초 계획된 축열조#1(2018년 4월 15.일), 축열조#2(2018년 4월 30.일)이
축열조#1(2018년 4월 29.일), 축열조#2(2018년 5월 13.일)로 변경되었으니 일정 준수 바람.
지연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4) J(CM사)에서 발송한 회의록(2018년 4월 9.일) 근거 원고는 설계, 제작능력 없음, 관리자 보유 없이 D병원 시스템 공사를 수주하여 품질 및 공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첨부: 2018년 4월 9.일 J 회의록

⑫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6호증의 1)을 보냈다.

제목: D병원 축열조 설치 관련내용 회신의 건

발신: 원고, 수신: 피고

■ 답변내용

1) 미승인 자재 사용 및 고의적 상표 가림(강관부속류)

: 미승인 자재 사용은 2번 작업 지시서 내용으로 급박한 공정상황에 승인 제품 입고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품질보증함을 회신했습니다.

2) 미승인 자재 사용(플랜지)

: 급박한 공정 상황에 따라 긴급히 주, 야간 공사 및 외부 배관 spool 제작 진행 중 일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는 피고 주장과 같이 "납기요청일"인 2018. 4. 15.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피고는 위 납기요청일이

최종적으로 2018. 5. 13.로 변경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각 문서들, 이 사건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 회의록 또는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D병원 본관 흡수식 냉동기 및 빙축열 설비 교체 공사'가 2018. 4. 무렵까지 완료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는 대형병원인 D병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2018. 5.경부터는 위 병원 본관 냉방시설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각 문서들, 구체적으로 원고가 2017. 12. 20. 작성한 수주 사양 확정 회의록(갑 제14호증), 피고가 2018. 1. 12.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설명자료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을 제1호증의 2 10쪽),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3일 전인 2018. 1. 5. 원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발주서(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발주자인 C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 즉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8. 4. 무렵까지는 완료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가 2018. 1. 12.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설명자료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8. 1. 8.경부터 시작하여 2018. 4. 초경 마무리되고, 2018. 4. 10.경에는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예정공정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③ 또한, C과 J,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 지연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C은 2018. 3. 8. 진행된 공정회의에서 '현 상황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빙축열시스템의 1차, 2차 준공)의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하절기 냉방 부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대처 가능한 여유 일정을 전부 소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공사추진 또는 공사포기 등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약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2018. 8. 10.로 정해진 것이라면, 무려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위 시점부터 C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 지연을 지적하며, 공사 포기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④ 원고 또한 C, J,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 지연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2018. 3. 9. 및 2018. 3. 26.자로 '1번 축열조 가동을 2018. 4. 15.까지, 2번 축열조 가동을 2018. 4. 30.까지 완료하여 목표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각 공문을 보내었다. 또한, 원고가 2018. 3. 26.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작업각서"에는 '작업기간'이 '2018년 3월 26.일~2018년 4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작업과 관련하여 목표 준공일에 대해 당사가 진행할 수 인적, 물적 투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납기요청일"이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미승인 자재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2018. 4. 18.자 공문을 통하여 '급박한 공정 상황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납기요청일"인 2018. 4. 15.이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고, 위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2018. 8. 10.이라는 원고 주장에는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다.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의 "납기요청일"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의사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그 무렵까지 원고가 축열조 납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호의관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C, J, 피고의 태도 및 원고가 작성한 위와 같은 각 공문 내용들(특히 원고는 2018. 3. 9.자 공문에서 "공사완료일 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위 "납기요청일"이 단순히 원고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표제가 "납품(설치)계약서"이고, "납기요청일"란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인 '흡수식냉동기 및 빙축열설비 교체공사를 2018. 4. 15.까지 각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납기요청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 및 그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⑦ 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을 위 하도급계약서 "공사기간"란과

같이 정하였다고 본다면, "공사기간"란에는 착공일이 2018. 1. 2.로, 준공일이 2018. 8. 1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착공일 또한 2018. 1. 2.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은 2018. 1. 8.이고, 원고는 2018. 1. 2.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각 사정,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위 도급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공사기간"란 기재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공사기간(2018. 1. 2. ~ 2018. 8. 10.)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⑧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2018. 8. 10.까지로 정해진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만을 특별히 2018. 4. 15.까지로 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발주자인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8. 4.경까지 완료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범위는 D병원 본관에 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원고 수행 부분)와 위 하도급공사 이외에 D병원 본관과 별관, 복지관 내의 터보냉동기를 교체하는 공사와 전체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 및 전기 관련 공사(피고 수행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피고로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2018. 4. 무렵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조기에 완료시키고,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은 피고가 2018. 1. 12.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설명자료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을 제1호증의 2 10쪽)의 기재와 J이 2018. 4. 9.자 공정회의 당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되면, 피고 수행 공사 부분인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한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이 2018. 4. 15.로 명시되어 있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C이나 피고의 요청에 따른 여러 변동사항 등이 없었더라면 "납기요청일"인 2018. 4. 15.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소장 7쪽),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원고는 "납기요청일"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일자였고, 이를 기준으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통념에도 현저히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납기요청일"은 2018. 4. 15.로 분명하게 정하여졌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 지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납기요청일이 2018. 4. 30.로, 2018. 5. 13.로 순차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일자가 유동적인 것이었다는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피고 사이에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의 날짜만이 언급되었을 뿐, 2018. 8.경의 날짜는 언급된 바 없다).

⑪ 또한 원고는, 원고와 L 주식회사 사이에 발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2018. 1. 2.부터 2018. 8. 10.까지인 점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 또한 2018. 8. 10.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보험증권은 원고가 L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바, 그 발급에 피고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2018. 8. 10.로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⑫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8. 5. 13. 이후 2019. 11.경까지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한 바 없는데,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가 "납기요청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9. 11.경까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가 2018. 3. 초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4. 18.자 공문에서는 "공기일정 지연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공 이후인 2018. 8.경부터는 공문(을 제7호증의 1, 2)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정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법적 분쟁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는 2018. 5. 13.인데,

원고는 2018. 8. 10. 비로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37억 359만 원(=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 × 지체상금율 3% × 2018. 5. 14.부터 2018. 8. 9.까지 87일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설계도면 미제공 및 구조변경 요청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18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브라인 물량 증가 및 보관장소 변경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25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 지연 사유를 고려하여 당초 "2018. 4. 15."이었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납기요청일"을 "2018. 4. 30."로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8. 5. 13."로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약 25일의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축열조 철거시 절단공법 변경 및 철거방법 변경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68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단공법 변경 및 철거방법 변경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지연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8. 5. 18.부터 2018. 6. 15.까지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 있는 추가 배관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F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하던 인력을 일부 차출하여 위 별도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10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인력을 일부 차출하여 별도 공사를 수행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7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지체상금의 감액

(가) 다만,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연으로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금전적 손해는 물론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 발주자인 C 계열사로부터 장래 관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 등 비금전적 손해)와 지체상금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적절한 지체상금 액수가 정해져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과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비율은 0.2%인 점, ④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본 지체상금 액수 37억 359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중 85%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나)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체상금채권은 555,538,500원(= 3,703,590,000원 × 15%)이 된다.

(4) 상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2018. 8. 10.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2018. 8. 10.)의 익월 말일인 2018. 9. 30.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9. 18.자 답변서가 2020. 9. 2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9. 30.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나) 한편 지체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2018. 9. 30. 이전에 위 지체상금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계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548,861,500원(= 앞서 이 사건 화재 관련 배상비용 3,080만 원과의 상계 결과 남은 수동채권 1,104,400,000원 - 자동채권 555,5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8,8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오영

판사서효성

판사이지희

1)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8. 8. 10.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가 2018. 8. 9.이라는 전제 하에 지체상금 액수를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2018. 5. 14.부터 2018. 8. 9.까지 기간은 88일이나, 이 역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